**소규모합병 공고**

주식회사 센트랄은 주식회사 네오씨티알과 2020년 07월 08일(수)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

상법 제 527조의 3 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 합병당사회사

가. 존속법인 : 주식회사 센트랄 (본점 소재지 : 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551)

나. 해산법인 : 주식회사 네오씨티알 (본점 소재지 : 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상촌길 307-50)

2. 합병방법 : 주식회사 센트랄이 주식회사 네오씨티알을 흡수합병 함

3. 합병기일 : 2020년 10월 01일(목)

4. 소규모합병

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 10%를 초과하지

아니하므로, 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의

승인으로 갈음 함

5. 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
가. 행사절차

: 2020년 07월 20일 현재 주주명부(실질주주명부 포함)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

반대하는 주주는 [별첨]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. 행사방법에 따라 제출

나. 제출기간 : 2020년 07월 22일(수) ~ 2020년 08월 05일(수)

다. 행사방법/장소(명부주주)

: 2020년 08월 05일까지 주식회사 센트랄 재경팀에 제출 (전화번호: 055-278-0232)

라. 주식매수청구권 : 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

마. 상법 제527조의3 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 100분의 20 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

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

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음

2020년 07월 22일

경남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551

주 식 회 사 센 트 랄

대 표 이 사 윤 용 호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[별첨]  **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**  주식회사 센트랄 대표이사 귀하 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네오씨티알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.   |  |  |  |  | | --- | --- | --- | --- | | 주 주 명 |  | | | | 소유주식의 종류 |  | 소유주식수 |  |   2020년 [  ] 월 [  ]일   |  |  | | --- | --- | | 성 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 또는 날인) | 주민등록번호 : | | 주 소 : | | | 연락처 : | | |